

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0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윤준병 · 전종덕
임미애 · 문대림 · 이원택
황명선 · 김현정 · 이소영
유동수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을 도모해서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.

그러나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음.

특히 「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」에 친환경농수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.

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군부대 일부를 제외하곤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따라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 군급식에 이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.

주요내용

「국군조직법」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「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함(안 제7조제5항).

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친환경농수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포함시킴(안 제11조제1항제5호).

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급식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「국군조직법」에 의하여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「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식재료) ① ~ ④ (생 략)	제7조(식재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「국군조직법」에 의하여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
제11조(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 수사항) ① 각군 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 등(이하 “군급식운영관계관”이라 한다)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 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11조(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 수사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5. 「 <u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